

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규정

(제정 2015. 10. 1.)

(제명변경 2017. 8. 1., 2021. 5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도내 지역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및 청년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·창업 및 진로지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에 설치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8.1., 2021.5.1.>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<개정 2017.8.1.>
2. 진로·취업 상담 및 컨설팅
3. 통합적 경력설계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연계
4. 진로·취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5. 현직자 멘토링, 취업특강, 직무박람회 등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
6. 업·직종별 직무교육 등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
7. 취업스터디 및 서포터즈 운영
8. 기업 및 업·직종 탐색 및 정보분석 지원
9. 워크넷 활용 일자리(채용)정보 제공
10. 기업설명회 및 채용행사 운영
11. 일경험 및 취업처 매칭
12. 졸업 이후(2년 내) 취업·경력개발·적응 지원
13. 청년정책 홍보 및 정책사업 연계
14. 특성화고 등 지역청년 대상 고용서비스
15.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16. 청년고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[본조개정 2021.5.1.]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학생취업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센터장은 센터의 대표로서 행정을 총괄한다.

제4조(조직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상담원을 둘 수 있다.

② 상담원은 관련분야 실무 유경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본 센터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4장 재정

제11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국가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본교 지원금
4. 그 밖의 센터사업에 의한 수입금

제12조(회계)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